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23시 24분



목차

목차	2
세제혜택	3
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중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소득세 공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장애인 의료비 공제	5
지원대상	5
지원내용	5
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	5
지원대상	5
지원내용	5
장애인 보험료 공제	5
지원대상	5
지원내용	5
상속세 상속 공제	6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	6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
장애인현황	장애인등록 등급심사제도	장애인시설 및 단체	연금 수당
보육 교육	의료 및 재활지원	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	일자리 용자지원
공공요금 관련	세제혜택	휠체어 무료 대여	

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
🔗 지원대상

- 1~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 - › 5년 이내 양도 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

🔗 지원내용

-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(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한도)
 - ›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
 - 자동차 판매인,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문의

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중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

🔗 지원대상

- 차량 명의를 1~3급(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·비속 (재혼 포함)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 - ›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
 - ›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

🔗 지원내용

- 취득세(중전 등록세 포함)·자동차세 면제
 - › 문의처 : 시청 세정과 신청

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

📌 지원대상

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)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으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

📌 지원내용

- LPG 연료사용 허용(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)
 - ▶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 -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
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

📌 지원대상

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
※ 도지역에 해당

📌 지원내용

-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
 - ▶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
소득세 공제

📌 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📌 지원내용

- 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(소득세법 제50조)
-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(소득세법 제51조)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장애인 의료비 공제

📌 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📌 지원내용

- 당해년도 의료비
 - ›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% 공제
 - › 국세청 ☎ 126 문의

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

📌 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📌 지원내용

-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% 공제
 - › 국세청 ☎ 126 문의

장애인 보험료 공제

📌 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📌 지원내용

-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

- › 연 100만원 한도
- › 국세청 ☎ 126 문의

상속세 상속 공제

📌 지원대상

- 등록장애인
 - ›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

📌 지원내용

-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
- 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(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곱한 금액을 공제
 - ※ 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- (500만원 × 기대여명의 연수)
- 관할 세무서에 신청

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

📌 지원대상

- 등록장애인
 - › 친족으로부터 재산(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)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 -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
 -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
 -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로 되어있을 것

📌 지원내용

-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
- ›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
 - 신탁을 해지하거나,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
 -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
 -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› 관할 세무서에 신청

Yeosu Web Contents

